#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 의안 번호 | 460 |
|---|---|

2021. 11. 29.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9.)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장원석)

가. 제안이유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는 강남 구민의 취업기회 제공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남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관 보육기관과 투자자가 집중되어 있는 역삼로에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사업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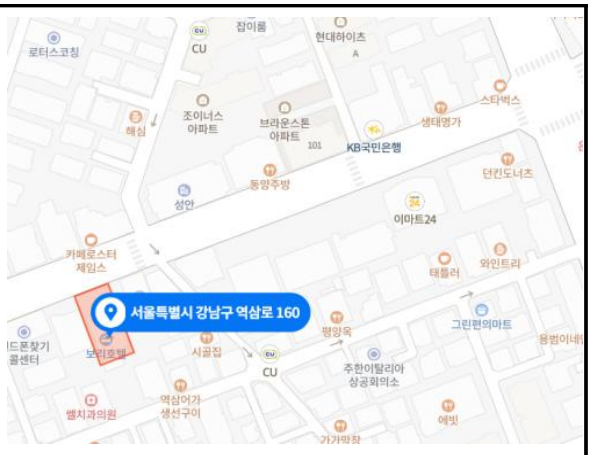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초기자본이 없는 창업회사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운영 및 시설관리
- 입주기업 지원(교육, 컨설팅, 코칭,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국내외,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졸업기업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연계강화(교육, 자금, 판로지원 등)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0(역삼동, 구 보리호텔)
- 규　　모 : 대지면적 1,094.30㎡(331평) / 지하3층 지상9층
- 위 치 도

|  |  |
|---|---|
| <조성안 투시도> | <위 치> |

○ 민간위탁 기간 : 2022. 2월 ~ 2025. 1월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163,637천원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제5조(창업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제5조(운영 등)**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br>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br>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br>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br>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br>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br>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칭)는 강남구 역삼로 160, 구) 보리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업지원센터의 하나로 운영하려는 것임. 강남 구민의 취업기회 제공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남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관 보육기관과 투자자가 집중되어 있는 역삼로에 조성한 창업지원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임.

- 2022년도 본예산에 세부사업으로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민간위탁금 11억6천3백6십3만7천원을 편성한 바 동일한 사업을 동의안은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칭)로, 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강남취·창업허브센터)로 각각 명칭을 달리하여 제출한 바 적절한 안건 제출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한편, 센터의 운영인력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하려는 바 인원 및 민간위탁금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또한 창업지원센터[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칭)]의 설치근거는 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1] 제3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탁의 근거는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임.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하나인 역삼스타트업센터[2] 비즈니스관[3], 포바관[4]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5]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 등)**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역삼스타트업센터**

❍ 사업규모 : 신규기업 및 연장기업 45명 예정

❍ 선발 및 지원대상

- 비지니스관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과 동일 선발 30명
- 포바관 입주기업 중 우수기업 중 선발 15명

※ 포바관 1년 지원 후 우수기업 선발을 통해 역삼 스타트업 센터에서 1년 연장 지원

3) **비즈니스관**

❍ 사업규모 : 신규기업 70명

❍ 지원대상 : 강남구민 20 ~ 39세 청년창업가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
- 입주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후 3년 이내 포함)

창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 개관되면 기존의 센터 공간활용 등을 포함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남취·창업허브센터의 민간위탁 계획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기간 : 2022. 2월. ~ 2025. 1월. (3년)

❍ 위탁사무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운영 및 시설관리
- 입주기업 지원(교육, 컨설팅, 코칭,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국내외,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졸업기업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연계강화(교육, 자금, 판로지원 등)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 1,163,637천원

---

- 1 ~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4) **포바관**

❍ 사업규모 : 연장기업 38명

❍선발방법

- 선발대상 : 비즈니스관 입주기업 중 우수기업
- 선발인원 : 38명(8 ~ 9개팀 내외)
- 선발방법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수익창출 등 정성·정량적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심사위원 구성 평가(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 1차 서면평가 : 졸업보고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적합성 평가
  - 2차 발표평가 : 프리젠테이션 발표심사(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비즈니스관 1년 지원 후 우수기업 선발을 통해 포바관에서 1년 연장 지원

5)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끝.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460 |
|---|---|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일자리정책과

## 1. 제안이유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는 강남 구민의 취업기회 제공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남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관 보육기관과 투자자가 집중되어 있는 역삼로에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초기자본이 없는 창업회사에게 과감한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운영 및 시설관리

○ 입주기업 지원(교육, 컨설팅, 코칭,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국내외,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졸업기업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연계강화(교육, 자금, 판로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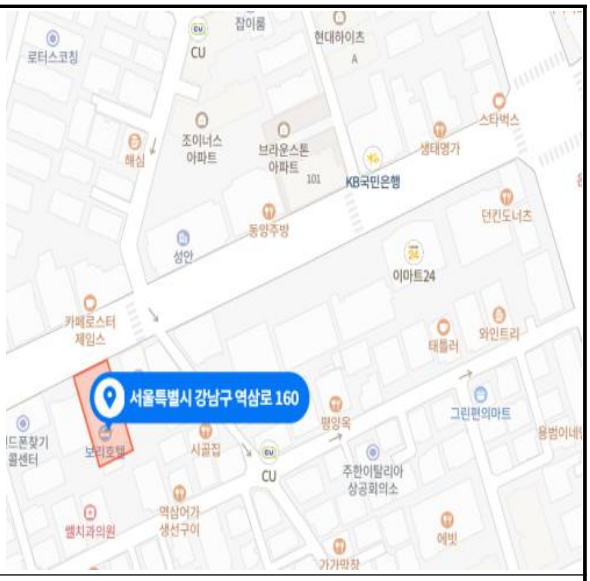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0(역삼동, 舊보리호텔)

○ 규　　모 : 총 연면적 1,094.30㎡(331평) / 지하3층 지상 9층

○ 위 치 도

<table>
<tr>
<td></td>
<td>
</td>
</tr>
<tr>
<td><조성안 투시도></td>
<td><위 치></td>
</tr>
</table>

마. 민간위탁 기간 : 2022. 2월. ~ 2025. 1월.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163,637천원

| 통계목 | 구분 | 세부집행내역 | 예산액<br>(단위 : 천원) |
|---|---|---|---|
| 총계 | | | 1,168,727 |
| 민간<br>위탁금 | 소 계 | | 1,168,727 |
| | 인건비 | · 팀장급 5,138,000원×1명×11개월=56,518,000원 | 56,518 |
| | | · 대리급 3,415,000원×1명×11개월=37,565,000원 | 37,565 |
| | | · 사원급 2,277,000원×2명×11개월=50,094,000원 | 50,094 |
| | 사회보험 | · 1,600,000원×11개월=17,600,000원 | 17,600 |
| | 입주기업<br>선발 | · 모집홍보자료 제작 및 온라인 홍보<br>5,000,000원×1회×11개월=5,000,000원 | 5,000 |
| | | · 심사위원 심사수당<br>150,000원×5명×3개월=2,250,000원 | 2,250 |
| | 입주기업<br>역량강화 | · 투자설명회 개최<br>3,000,000원×1회×10개월=30,000,000원 | 30,000 |
| | | · 기업가정신 교육<br>2,000,000원×1회×10개월=20,000,000원 | 20,000 |
| | | · 법률상담 및 컨설팅<br>250,000원×4회×4명×10개월=40,000,000원 | 40,000 |
| | | · 네트워킹 데이 개최<br>5,000,000원×1회=5,000,000원 | 5,000 |
| | | · 초기창업기업 IR 멘토링 데이 개최<br>2,000,000원×1회×10개월=20,000,000원 | 20,000 |
| | |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및 인증 지원<br>2,000,000원×1회×15개월=30,000,000원 | 30,000 |
| | 홍보,<br>마케팅<br>지원 | · 입주기업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br>4,000,000원×1회×10개월=40,000,000 | 40,000 |
| | | · 입주기업 우수제품 전시공간 운영(팝업스토어 등)<br>2,500,000원×1회×10개월=25,000,000원 | 25,000 |
| | |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br>20,000,000원×1회=20,000,000원 | 20,000 |
| | 사업홍보 | · 개관식 개최<br>10,000,000원×1회=10,000,000원 | 10,000 |
| | |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br>10,000,000원×1식=10,000,000원 | 10,000 |
| | | · 시설홍보 및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온라인 등)<br>2,000,000원×1회×4개월=8,000,000원 | 8,000 |

| 통계목 | 구분 | 세부집행내역 | 예산액<br>(단위 : 천원) |
|---|---|---|---|
| 민간<br>위탁금 | 사무운영비 |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br>125,000원×2개×11개층×10개월=27,500,000원 | 27,500 |
| | | · 복합기 임차<br>265,000원×2대×11개층×10개월=58,300,000원 | 58,300 |
| | | ·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br>5,000,000원×10개월=50,000,000원 | 50,000 |
| | | · 회계감사 수수료<br>3,000,000원×1회=3,000,000원 | 3,000 |
| | | ·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원<br>1,000,000원×10개월=10,000,000원 | 10,000 |
| | 공공운영비 | · 인터넷 및 통신비 4,000,000원×10개월=40,000,000원 | 40,000 |
| | | · 전기료 및 수도요금<br>12,000,000원×10개월=120,000,000원 | 120,000 |
| | | · 무인경비 250,000원×12개월=3,000,000원 | 3,000 |
| | | · 엘리베이터 관리 484,000원×10개월=4,840,000원 | 4,840 |
| | | · 카리프트 관리 638,000원×10개월=6,380,000원 | 6,380 |
| | | · 전기안전 관리 440,000원×10개월=4,400,000원 | 4,400 |
| | | · 교통유발부담금(연 1회) 2,300,000원 | 2,300 |
| | | · 폐기물 수거 200,000원×1회×10개월=2,000,000원 | 2,000 |
| | | · 방역소독 500,000원×4회×10개월=20,000,000원 | 20,000 |
| | 시설장비<br>유지 | · 냉난방기 등 유지관리<br>80,000원×92개×2개월=14,720,000원 | 14,720 |
| | | · 시설유지 보수<br>5,000,000원×10개월=50,000,000원 | 50,000 |
| | 시설관리<br>용역 | · 건물 관리소장<br>4,419,000원×1명×10개월=44,190,000원 | 44,190 |
| | | · 경비원 3,286,000원×2명×10개월=65,720,000원 | 65,720 |
| | | · 주차관리 3,176,000원×1명×10개월=31,760,000원 | 31,760 |
| | | · 청소미화<br>3,569,800원×5명×10개월=178,490,000원 | 178,490 |
| | 사무관리비 | · 심사위원 심사수당<br>150,000원×1회×12명=1,800,000원 | 1,800 |
| | | · 공증 비용 300,000원×1회=300,000원 | 300 |
| | 업무추진비 | · 30,000원×10회×10명×1개월=3,000,000원 | 3,000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등)**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